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838
----------	-----

2023년 6월 21일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5월 30일, 김형재 의원(찬성자: 46명)
나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5일
다. 상정일자 :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(2023년 6월 21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형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물환경보전법」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조항 번호를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관련 상위법인 「물환경보전법」 이 개정됨에 따라 수질하수도사용료 징수 근거조항을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8항에서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9항으로 수정함.
(안 제23조제3항제2호, 안 별표 3)

3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- 본 개정안은 현행 「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(이하 “조례”)」 제 23조제3항제2호 및 별표 3에서 「물환경보전법(이하 “법”)」 제 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,
 - ‘21.4월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제32조제8항이 제32조제9항¹⁾으로 항 번호가 개정²⁾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 번호를 반영하려는 것으로,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.
- 참고로, 서울시는 현행 조례에 따라 수질하수도사용료를 부과·징수한 실적은 전무함.

[표 1] 개정안 주요골자(안 제23조제3항제2호, 안 별표 3)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사용료) ①~② (생략)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표 2에 의한 하수도 사용요금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「 <u>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</u> ----- 3. (생략) ④ (생략)	제23조(사용료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「 <u>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의</u> ----- 3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
<별표 3>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	<별표 3>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

1)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(배출허용기준) ① - ⑧ (생략)
 ⑨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 2) 법률 제18030호, 2021. 4. 13., 일부개정

현행	개정안
<p>□ 사용료 산정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수질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되는 폐수의 농도와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농도 또는 같은 법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와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. · 생물학적산소요구량(BOD) 또는 화학적산소요구량(COD)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, 부유물질농도(SS), 총질소 (T-N), 총인(T-P)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. · 폐수배출량은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8조의2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. 	<p>□ 사용료 산정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----- ----- -----제32조제9항의----- -----. · (현행과 같음) · (현행과 같음)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없음
7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없음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석위원 전원 찬성)
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형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838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
발 의 자: 김형재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 곽향기, 구미경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 김지향, 김태수, 김혜영, 김혜지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 박상혁, 박영한, 박춘선, 박칠성, 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 신복자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 윤종복, 이병윤, 이상욱, 이종배, 이종태, 이종환, 임춘대, 최민규, 최유희, 최호정, 허 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46명)

1. 제안이유

- 「물환경보전법」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조항 번호를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관련 상위법인 「물환경보전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수질하수도사용료 징수 근거조항을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8항에서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9항으로 수정함. (안 제23조제3항제2호, 안 별표 3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물환경보전법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3항제2호 중 “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8항의”를 “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9항의”로 한다.

별표 3 사용료 산정기준 중 “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8항의”를 “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9항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3조(사용료) ①~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표 2에 의한 하수도 사용요금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「<u>물환경보전법</u>」 제32조제8항의 -----</p> <p>3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<별표 3>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사용료 산정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수질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되는 폐수의 농도와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농도 또는 같은 법 <u>제32조제8항의</u>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와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. · 생물학적산소요구량(BOD) 또는 화학적산소요구량(COD)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, 부유물질농도(SS), 총질소 (T-N), 총인 (T-P)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. · 폐수배출량은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8조의2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. 	<p>제23조(사용료) 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「<u>물환경보전법</u>」 제32조제9항의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별표 3>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사용료 산정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32조제9항의</u> ----- ----- · (현행과 같음) · (현행과 같음)